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제안사유

- 재래시장 지방세 감면조항의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중 자구를 수정하고,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자구수정(안 제17조)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인하(안 제28조)
- 관련근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세법, 전라남도 시·군 감면조례표준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한다.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2로 한다”를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1.5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 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p> <p>-----</p> <p>-----</p> <p>1. 시장정비-----</p> <p>-----</p> <p>-----</p> <p>-----</p> <p>-----</p> <p>2. 시장정비-----</p> <p>-----</p> <p>-----</p> <p>-----</p> <p>-----</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감면) ②-----</p> <p>-----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p> <p>-----</p> <p>-----</p>